

수용목적물의 범위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.

 <P class=HStyle0>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한다.</P> <P class=HStyle0>(대법원 1987.09.08. 선고 87누395 판결)</P> <P class=HStyle0>※ 같은 뜻의 판례 : 대법원 1994.01.11 선고 93누8108 판결</P>